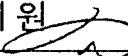


의 안 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제94호		
건 명	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		
제 안(출)자	김옥자의원 외 5인	제 안(출)년 월 일	1997. 2. 13
검 토 위 원 명	이 휘 남 전문위원 		

1. 검토내용

가. 제안이유

- 국내여비규정이 '96. 12. 31자로 개정 공포되어 숙박료등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6와 비고3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국내여비의 조정비율에 따른 인상율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(안)임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조례 제6조 제1항과 별표1에 나와 있는 여비의 종류(구분)중 「현지교통비」를 「일비」로 용어변경함.
- 현행조례 별표1중 「일비」를 의장·부의장과 의원을 「6,500원」에서 「10,000원」으로 각각 인상하고, 숙박료를 의장·부의장의 경우 「37,500원」에서 「41,000원」으로 의원의 경우 「18,000원」에서 「19,500원」으로 각각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정함.

2. 검토결과

가. 검토의견

- 국내여비규정이 '96. 12. 31 개정되고 동 개정령 부칙에 의거 '97.1.1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된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우리구의 관련조례를 조정하여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령 별표6 비고3, 그리고 본 서초구조례 별표1 비고4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례개정(안)으로 판단됨.

3. 관련법규 등

- 가. 국내여비규정 개정내용 → 의안참조
- 나. 신구조문대비표 → 의안참조
- 다. 현행조례 : 제5조, 제6조, 별표1 → 별첨1참조
- 라. 지방자치법시행령 : 제15조, 별표6 → 별첨2참조

<별첨1> 현행조례

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·회의수당및여비의 지급에관한조례

[1991. 4. 24]
[조례 제150호]

개정 1992. 4. 18 조례 제182호
개정 1992. 11. 3 조례 제203호
개정 1994. 8. 31 조례 제254호
개정 1995. 8. 30 조례 제294호
개정 1996. 2. 22 조례 제308호
개정 1996. 7. 22 조례 제322호

제 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
의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 의원(이하 “의원”이
라 한다)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, 회의수당,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1995. 8.30)

제 2조(의정활동비) ①의원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·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
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350,000원의 의정활동비를
지급한다. 다만, 1월 미만일 경우에는 일괄 계산하여 지급한다.(개정
1995. 8.30)

②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서초구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.(개정
1995. 8.30)

제 3조(삭제 95. 8.30)

제 4조(회의수당의 지급) ①의원이 회의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경
우에 한하여 1일 50,000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 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
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회
의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.(개정 1996. 2.22)

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일괄 지급한다.(개정 1995. 8.
30)

✓ 제 5조(여비의 지급)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
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.(개정 1995. 8.30)

제 6 조(여비의 종류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(철도·선박·항공·자동차운임), 현지교통비, 숙박료, 식비로 구분한다.(개정 1996. 7.22)

②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(철도·선박·항공·자동차운임), 일비, 숙박료 준비금으로 구분한다.(개정 1996. 7.22)

제 7 조(여비의 지급구분) ①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(개정 1995. 8.30)

②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.(개정 1995. 8.30)

제 8 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초구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.(개정 1995. 8.30)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집회일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2. 4.18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5.11. 3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9월 17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4. 8.31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5. 8.30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6. 2.2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2월 30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996. 7.22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국내 여비지급 구분표 (제7조 제1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 分	철 도 운 입	선 박 운 입	항 공 운 입	자동차 운 입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료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의장· 부의장	1등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37,500	25,000
의 원	2등급	2 등 정 액	정 액	정 액	6,500	18,000	18,000

- 비 고 : 1.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(동일 특별시·광역시·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)이나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지급한다.
3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4.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·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[별표 2] 생략

〈별첨 2〉 — 지방자치법 시행령 —

제 3 장 지방의회

제15조 (의정활동비·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)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, 회의수당 (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)의 지급기준은 별표 5,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95.12.30>

[별표 6] <개정 94.7.6>

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지급범위(제15조관련)

(단위: 원)

지 급 기준액 구 분		철 도 운 임	선 박 운 임	항 공 운 임	자동차 운 임	현 지 교통비 (1일당)	숙박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
시 · 도	의장 · 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
	의 원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
시 · 군 · 자치	의장 · 부의장	1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6,500	20,700	11,000
구	의 원	2등급	2등정액	정 액	정 액	6,500	16,200	10,500

- 비 고 : 1. 의회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(동일 특별시·직할시·시 또는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)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2.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,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,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.
3.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있다.